

<2022 관세사 1차 한권으로 끝내기> 개정 6판 1쇄(발행일 : 2021년 9월 3일)
개정 법령 추록

※ 안녕하세요, 시대고시기획입니다. <2022 관세사 1차 한권으로 끝내기> 개정 6판 1쇄 도서 출간 이후 개정된 법령 및 변경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상권] - 1과목 관세법개론

■ 관세법[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3호, 2021. 12. 21., 일부개정]

페이지	수정 전(수정할 내용)	수정 후
29p (4) 상단	㉔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 물(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구매대행업자)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자(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64p (5) 아래	<신 설>	(6) 미제출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제출기한 세관장은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6p (3) ① ㉔	㉕ 우편물(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	㉕ 우편물(다만, 제258조 제2항에 따라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
67p	㉖ 적용대상 : <중략>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㉖ 적용대상 : <중략>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③	<p>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여 해당 물품에 그 낮은 세율(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79p ⑪	<p>㉠ 재심사 :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 내용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p>	<p>㉠ 재심사 :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 내용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p>
80p 하단	<p>㉡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나 약속의 유효기간 : <중략> 그 효력을 잃는다(법 제56조 제2항).</p>	<p>㉡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나 약속의 유효기간 : <중략> 그 효력을 잃는다(법 제56조 제3항).</p>
92p ⑥	<p>㉠ 재심사 :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와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 약속 내용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p>	<p>㉠ 재심사 :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와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 약속 내용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p>
135p (4) ㉡ 하단	<p>㉡ 보정이자의 징수 : 세관장은 보정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후략></p>	<p>㉡ 보정이자의 징수 : 세관장은 보정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제42조(가산세)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p>

		고려하여 <후략>
136p (4) ㉔	㉔ 보정이자 제외대상 <전 략> - 그 밖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 설>	㉔ 보정이자 제외대상 <전 략> - 그 밖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㉔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42조(가산세) 제2항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후 세액보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제42조(가산세)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41-142p 3. (1), (3)	㉔ 납부지연가산세 :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 포함)가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미적용]	㉔ 납부지연가산세 :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 포함)가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미적용]
142p (5) 표 하단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172p (2)	㉔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규칙 제41조 제2항)]은 제외한다. ㉔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이나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 및 전파관	㉔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규칙 제41조 제2항)]은 제외한다. ㉔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㉔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이나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 및 전파관

	<p>리용 물품</p> <p>⑤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간행물,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p> <p>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가 환경오염(소음 및 진동을 포함)을 측정하거나 분석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기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p> <p>⑦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p> <p>⑧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p>	<p>리용 물품</p> <p>⑥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간행물,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p> <p>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가 환경오염(소음 및 진동을 포함)을 측정하거나 분석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기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p> <p>⑧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p> <p>⑨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p>										
<p>182p</p> <p>④ ㉠ 표</p>	<table border="1"> <tr><td>2019. 05. 01~2021. 12. 31</td></tr> <tr><td>2022. 01. 01~2022. 12. 31</td></tr> <tr><td>2023. 01. 01~2023. 12. 31</td></tr> <tr><td>2024. 01. 01~2024. 12. 31</td></tr> <tr><td>2025. 01. 01~2025. 12. 31</td></tr> </table>	2019. 05. 01~2021. 12. 31	2022. 01. 01~2022. 12. 31	2023. 01. 01~2023. 12. 31	2024. 01. 01~2024. 12. 31	2025. 01. 01~2025. 12. 31	<table border="1"> <tr><td>2022. 01. 01~2024. 12. 31</td></tr> <tr><td>2025. 01. 01~2025. 12. 31</td></tr> <tr><td>2026. 01. 01~2026. 12. 31</td></tr> <tr><td>2027. 01. 01~2027. 12. 31</td></tr> <tr><td>2028. 01. 01~2028. 12. 31</td></tr> </table>	2022. 01. 01~2024. 12. 31	2025. 01. 01~2025. 12. 31	2026. 01. 01~2026. 12. 31	2027. 01. 01~2027. 12. 31	2028. 01. 01~2028. 12. 31
2019. 05. 01~2021. 12. 31												
2022. 01. 01~2022. 12. 31												
2023. 01. 01~2023. 12. 31												
2024. 01. 01~2024. 12. 31												
2025. 01. 01~2025. 12. 31												
2022. 01. 01~2024. 12. 31												
2025. 01. 01~2025. 12. 31												
2026. 01. 01~2026. 12. 31												
2027. 01. 01~2027. 12. 31												
2028. 01. 01~2028. 12. 31												
<p>195p</p> <p>(3) ① ㉠</p>	<p>㉠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p> <p>㉡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p> <p><신 설></p>	<p>㉠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p> <p>㉡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p> <p>㉢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p>										

		<p>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p>
224p 1.	<p>(2) 과세 전 통지의 생략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 략> ④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p>	<p>(2) 과세 전 통지의 생략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p> <p><전 략> ④ 면제된 관세를 징수하거나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p>
252p (3) ①	<p>㉔ 세관공무원의 확인 :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㉔ 세관공무원의 확인 :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p>
254-255p	<p>④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의 하역 등(법 제143조) ㉑ 하역 또는 환적허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p> <p>㉒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㉓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신 설></p> <p><중 략> ㉔ 외국물품의 적재 : 위 ④의 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적재</p>	<p>④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법 제143조) ㉑ 하역 또는 환적허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원양어선)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p> <p>㉒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㉓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한 물품</p> <p><중 략></p>

	<p>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p> <p>㉔ 선박용품 등의 인정범위 : 위 ④의 ㉑에 따른 물품의 종류와 수량은 선박이나 항공기의 종류, 톤수 또는 무게, 항행일수 또는 운항일수, 여객과 승무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이어야 한다.</p> <p>㉕ 관세의 징수 : 외국물품인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p>	<p>㉖ 외국물품의 적재 : 위 ④의 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어선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p> <p>㉗ 선박용품 등의 인정범위 : 위 ④의 ㉑에 따른 물품의 종류와 수량은 선박이나 항공기의 종류, 톤수 또는 무게, 항행일수·운항일수 또는 조업일수, 여객과 승무원·선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이어야 한다.</p> <p>㉘ 관세의 징수 : 외국물품이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p>
285p	<p>㉙ 매출액 보고(법 제176조의2 제7항)</p> <p>㉚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세관매장별 매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㉙ 매출액 보고(법 제176조의2 제7항)</p> <p>㉚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보세관매장별 매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292p ㉛ ㉜	<p>• 신속한 매각을 위하여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 등에서 전자문서를 통하여 매각하려는 경우</p>	<p>• 신속한 매각을 위하여 사이버몰 등에서 전자문서를 통하여 매각하려는 경우</p>
300p ㉝ 표	<p>등록의 유효기간</p> <p>•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p>	<p>등록의 유효기간</p> <p>•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p>
303-304p	㉞ 의무 이행의 요구(법 제227조)	㉞ 의무 이행의 요구 및 조사(법 제227조)

<p>1. (1)</p>	<p>㉠ 의무의 이행 또는 면제 <중 략> <신 설></p>	<p>㉠ 의무의 이행 또는 면제 <중 략> ㉡ 의무 이행 조사 : 세관장은 의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0조의3(유통이력 조사)을 준용한다.</p>
<p>308p</p>	<p>㉣ 원산지확인위원회(법 제232조의3)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확인위원회를 둔다. 원산지확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원산지 확인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 확인 ㉢ 원산지증명서의 내용 확인 ㉣ 그 밖에 관세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p> </div>	<p><삭 제></p>
<p>313p (3) ①</p>	<p>㉠ 품질 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 세관장은 물품의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품질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 등을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인 물품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 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230조의2).</p>	<p>㉠ 품질 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 세관장은 물품의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품질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 등을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인 물품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 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230조의2).</p>

<p>314p ㉔ 상단</p>	<p>㉔ 통관보류 사유</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전 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에 대한 안정성 검사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div>	<p>㉔ 통관보류 사유</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전 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에 대한 안정성 검사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div>
<p>332p 보충박스</p>	<p>3. 세관장의 탁송품 운송업자에 대한 법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등) 제7항에 따른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p>	<p>3. 세관장의 탁송품 운송업자에 대한 법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제7항에 따른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p>
<p>333p</p>	<p>㉔ 통관절차상의 혜택 제공</p> <p>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절차상의 혜택(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의 완화 또는 수출입신고 및 납부절차의 간소화)을 제공할 수 있다.</p> <p>㉔ 관세청장은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 상호 조건에 따라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p> <p>㉔ 공인의 취소 :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공인 심사요청을 거졌으로 한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p> <p>㉔ 유효기간 : 공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p>	<p>㉔ 예비심사 신청</p> <p>㉔ 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제출서류의 적정성, 개별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 등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미리 관세청장에게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p> <p>㉔ 관세청장은 예비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심사를 하는 경우 예비심사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p> <p>㉔ 유효기간 : 공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갱신할 수 있다.</p> <p>㉔ 공인의 갱신 : 공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신청서에 심사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㉔ 공인의 갱신 : 공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신청서에 심사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㉕ 갱신사실의 통보 : 관세청장은 공인을 받은 자에게 공인을 갱신하려면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해당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p> <p>㉖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의 등급, 안전관리 공인심사에 관한 세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에 관한 다른 법령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㉗ 지원사업 : 관세청장은 중소기업 중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거나 유지하는데에 필요한 상담·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p> <p>㉘ 업체 지원 및 관리 :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로 공인받기 위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정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p> <p>㉙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의 측정·평가(영 제259조의4) :</p>	<p>㉚ 갱신사실의 통보 : 관세청장은 공인을 받은 자에게 공인을 갱신하려면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해당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p> <p>㉛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의 등급, 안전관리 공인심사에 관한 세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에 관한 다른 법령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제255조의3)</p> <p>㉝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 제공</p> <p>㉞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p> <p>㉟ 관세청장은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상호 조건에 따라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p> <p>㊱ 혜택의 정지 :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자율 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p> <p>㊲ 시정명령 : 관세청장은 ㊱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에 그 사유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	--

	<p>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게 이를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㉔ 준수도의 측정·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 : 관세청장은 연 4회의 범위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기준의 준수정도에 대한 측정·평가를 할 수 있다.</p> <div data-bbox="521 582 1236 746"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운영인, 납세의무자, 화물관리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 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화주 포함), 특별통관 대상 업체, 보세운송사업자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기업체</p> </div> <p>㉕ 측정결과의 활용 대상 : 관세청장은 준수도 측정·평가의 결과를 다음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p> <div data-bbox="521 863 1236 1027"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한 신고 방식의 적용 등 통관 절차의 간소화 • 검사 대상 수출입물품의 선별 • 그 밖에 업체 및 화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div> <p>㉖ 평가항목 고시 : 준수도 측정·평가에 대한 평가 항목, 배점 및 등급 등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div data-bbox="521 1144 1236 1308"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알아두기</p> <p>관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통관절차의 특례 제도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관세법 제252조), 수입신고 전</p> </div>	<p>⑦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제255조의4)</p> <p>㉑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p> <p>㉒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㉓ 양도 등의 경우 관세청 보고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동사항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p> <p>⑧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제255조의5)</p> <p>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p> <div data-bbox="1279 1144 1991 1308"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 받은 경우</p> <p>㉒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공인 당시의 업체와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판</p> </div>
--	--	--

	<p>의 물품 반출(동법 제253조),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동법 제254조), 탁송품의 특별통관(동법 제254조의2), 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동법 제240조의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동법 제255조의2), 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동법 제240조의6) 등이 있다.</p> <p>㉞ 양도 등의 경우 관세청 보고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p>	<p>세청장이 판단하는 경우</p> <p>㉟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p> <p>㊱ 정지 처분을 공인의 유효기간 동안 5회 이상 받은 경우</p> <p>㊲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㊳ 그 밖에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㉟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관련 지원사업(제255조의6)</p> <p>관세청장은 중소기업 중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거나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상담·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p> <p>㊱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의 측정·평가(제255조의7, 영 제259조의4)</p> <p>㊲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기 위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정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측정·평가할 수 있다.</p> <p>㊳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게 이를 자율적으로 평가하</p>
--	---	---

		<p>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 준수도의 측정·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 : 관세청장은 연 4회의 범위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기준의 준수정도에 대한 측정·평가를 할 수 있다.</p> <div data-bbox="1279 456 1991 619"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운영인, 납세의무자, 화물관리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 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화주 포함), 특별통관 대상 업체, 보세운송사업자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기업체</p> </div> <p>㉡ 측정결과의 활용 대상 : 관세청장은 준수도 측정·평가의 결과를 다음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p> <div data-bbox="1279 735 1991 898"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한 신고 방식의 적용 등 통관 절차의 간소화 • 검사 대상 수출입물품의 선별 • 그 밖에 업체 및 화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div> <p>㉢ 평가항목 고시 : 준수도 측정·평가에 대한 평가 항목, 배점 및 등급 등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div data-bbox="1279 1018 1991 1310"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알아두기</p> <p>관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통관절차의 특례 제도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관세법 제252조), 수입신고 전의 물품 반출(동법 제253조),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동법 제254조), 탁송품의 특별통관(동법 제254조의2), 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동법 제240</p> </div>
--	--	--

		<p>조의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동법 제255조의2), 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동법 제240조의6) 등이 있다.</p> <p>㉠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제256조의2)</p> <p>㉠ 사전전자정보의 제출 : 통관우체국의 장은 수입하려는 우편물의 발송국으로부터 해당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에 세관신고정보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보(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정보를 해당 우편물이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되기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사전전자정보가 미제출된 우편물 반송 :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우정사업본부장과 협의하여 사전전자정보 제출대상으로 정한 국가에서 발송한 우편물 중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되지 아니한 우편물에 대해서는 통관우체국의 장으로 하여금 반송하도록 할 수 있다.</p> <p>㉢ 우편물목록의 제출 생략 : 통관우체국의 장은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된 우편물에 대해서는 우편물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고 세관장에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우편물목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p>
<p>376p 2. (2) ④</p>	<p>㉠ 서면실태조사 :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대</p>	<p>㉠ 서면실태조사 :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대</p>

	<p>상으로 통신판매증개를 하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거래되는 물품 <후 략></p>	<p>상으로 통신판매증개를 하는 사이버몰에서 거래되는 물품 <후 략></p>
<p>356p ③ 1천만 원 이하의 벌금</p>	<p>㉔ <중략> 제140조(물품의 하역) 제1항·제2항·제4항(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141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제1호·제3호(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142조(항외 하역) 제1항(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144조(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 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150조(국경출입차량의 출발절차), 제151조(물품의 하역 등) 또는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제2항을 위반한 자</p> <p>㉕ 제135조(입항절차) 제2항(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과실로 여객명부 또는 승객예약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 제200조(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제3항, 제203조(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 제1항 또는 제262조(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㉔ <중략> 제140조(물품의 하역) 제1항·제4항·제6항(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142조(항외 하역) 제1항(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144조(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 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150조(국경출입차량의 출발절차), 제151조(물품의 하역 등),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제2항 또는 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자</p> <p>㉕ 제200조(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제3항, 제203조(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 제1항 또는 제262조(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358p 2.</p>	<p>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징수한다.</p>	<p>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징수한다.</p>

	<p><신 설></p> <p>(1)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제37조의4(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276조(허위신고죄 등)는 적용되지 아니한다.</p> <p>(2)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 략></p> <p>(3)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 략></p>	<p>(1) 2억 원 이하의 과태료 제37조의4(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276조(허위신고죄 등)는 적용되지 아니한다.</p> <p>(2)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제37조의4(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자에게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276조(허위신고죄 등)는 적용되지 아니한다.</p> <p>(3)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 략></p> <p>(4)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 략></p>
	<p>(4)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①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 ② 제38조(신고납부) 제3항,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제1항,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제3항, 제140조(물품의 하역) 제5항, 제157조(물품의 반입·반출) 제1항, 제158조(보수작업) 제2항·제6항, 제172조(물품에 대</p> </div>	<p>(5)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①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 ② 제38조(신고납부) 제3항,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제1항,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제3항, 제135조 제2항(외국 기착의 보고 - 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136조 제3항(외국 기착의 보고 - 선박이나 항</p> </div>

	<p>한 보관책임) 제3항, 제194조(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 - 종합보세구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196조의2(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인도 특례) 제5항,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 제3항,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반출 등) 제1항, 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 제1항, 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제215조(보세운송 보고 - 조난물품의 운송 및 내국운송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216조(보세운송통로) 제2항(조난물품의 운송 및 내국운송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221조(내국운송의 신고) 제1항, 제222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및 보고) 제3항, 제225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제1항 후단 또는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제1항을 위반한 자</p> <p><후 략></p> <p>(5)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p>	<p>공기는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140조 제5항, 제141조 제1호·제3호(외국 기착의 보고 - 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157조(물품의 반입·반출) 제1항, 제158조(보수작업) 제2항·제6항, 제172조(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제3항, 제194조(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 - 종합보세구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196조의2(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인도 특례) 제5항,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 제3항,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반출 등) 제1항, 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 제1항, 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제215조(보세운송 보고 - 조난물품의 운송 및 내국운송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216조(보세운송통로) 제2항(조난물품의 운송 및 내국운송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221조(내국운송의 신고) 제1항, 제222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및 보고) 제3항, 제225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제1항 후단 또는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제1항을 위반한 자</p> <p><후 략></p> <p>(6)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p>
<p>381p 2.</p>	<p>(2)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법 제329조) ① 권한의 위임 : 관세법에 따른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권</p>	<p>(2)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법 제329조) ① 권한의 위임</p>

	<p>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그 권한의 일부를 세관장이나 그 밖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중 략></p> <p>㉔ 관세청장이 특정 법인에 위탁 :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의 신고에 관한 업무(신고서의 접수 및 보완요구만 해당)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㉕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특정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p> <p>㉖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하는 물품 및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사용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에 관한 업무에 한정)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㉗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3조(세관검사장) 제3항 단서에 따른 물품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일부(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에 한정)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㉑ 관세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㉑ ㉒ 덩핑방지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p> <p>㉑ ㉓ 상계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p> </div> <p>㉒ 관세법에 따른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그 권한의 일부를 세관장이나 그 밖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중 략></p> <p>㉓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특정 단체에 위탁</p> <p>관세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업무 중 다음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㉓ ㉑ 물품 검사비용 지원 업무 중 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p> <p>㉓ ㉒ 지식재산권의 신고 업무 중 신고서 접수 및 보완요구</p> <p>㉓ ㉑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심사 지원 및 예비심사 지원</p> <p>㉓ ㉒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업무 중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하는 물품 및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사용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p> </div>
<p>382p</p> <p>3. (3) ①</p>	<p>㉑ 수출하거나 수입한 화물에 관한 사항</p> <p>㉒ 입항하거나 출항한 국제무역선 및 국제무역기에 관한</p>	<p>㉑ 수출하거나 수입한 화물에 관한 사항</p> <p>㉒ 입항하거나 출항한 국제무역선 및 국제무역기에 관한</p>

	<p>사항</p> <p><신 설></p> <p>㉔ 그 밖에 외국무역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사항</p> <p>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에 관한 사항</p> <p>㉕ 그 밖에 외국무역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384p (7)	<p><전 략></p> <p>③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등) 제2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사람</p> <p>④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제5항에 따라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p>⑤ 제327조의2(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 등) 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p> <p>⑥ 제327조의3(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p> <p>⑦ 제3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p>⑧ 다음의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관세채납정리위원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관세정보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관세심사위원회, 보세사정계위원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원산지확인위원회,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p>	<p><전 략></p> <p>③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제5항에 따라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p>④ 제327조의2(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 등) 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p> <p>⑤ 제327조의3(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p> <p>⑥ 제3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p>⑦ 다음의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관세채납정리위원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관세정보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관세심사위원회, 보세사정계위원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p>
385p 10번 문제	<p>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신고에 관한 업무의 일부(신고서의 접수 및 보완 요구만 해당)를 세관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 세관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장 → 지식재산권</p>	<p>관세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업무 중 지식재산권의 신고 업무 중 신고서 접수 및 보완 요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 관세청장이 정하는 단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p>

보호업무와 관련된 단체(관세법 제329조 제4항)	(관세법 제329조 제4항)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특례법)[시행 2022. 1. 1.] [법률 제18592호, 2021. 12. 21., 일부개정]

페이지	수정 전(수정할 내용)	수정 후
397p	<p>㉔ 서류의 첨부 : 수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㉑ 원산지증빙서류 ㉒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보정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경정청구서</p> </div>	<p>㉔ 서류의 첨부 : 수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계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㉑ 원산지증빙서류 ㉒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보정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경정청구서</p> </div> <p>▷ 세관장은 ㉔의 단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입자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㉕ 납부한 세액의 보정신청 및 경정청구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이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㉕ 납부한 세액의 경정청구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다.</p> <p>⑦ 세액의 보정·경정 및 관세 환급 세관장은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고 납부한 세액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p> <p>⑧ 준용규정 세액의 보정·경정 및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의2(보정) 제1항·제2항,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 및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를 준용한다.</p>	<p>⑦ 세액의 경정 및 관세 환급 세관장은 경정을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납부한 세액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p> <p>⑧ 준용규정 세액의 경정 및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 및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를 준용한다.</p>
<p>409p (6) ③</p>	<p>㉠ 세액정정·세액보정 신청, 수정신고 수입자는 계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후략></p> <p>㉡ 세액정정 신청·경정청구 수입자는 계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후략></p>	<p>㉠ 세액정정·세액보정 신청, 수정신고 수입자는 계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거나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후략></p> <p>㉡ 세액정정 신청·경정청구 수입자는 계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거나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후략></p>
<p>437p 4. (2)</p>	<p>관세청장은 협정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관 절차의 간소화,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정보 교환, 세관기술의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력할 수 있다.</p>	<p>관세청장은 협정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력할 수 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① 통관 절차의 간소화</p> </div>

	<p>①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상호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② 원산지와 관련되는 법령의 교환에 관한 사항 ③ 서류 없는 통관절차의 구축, 전자무역환경의 증진 등 통관절차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④ 세관공무원과 통관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⑤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정보 교환 ⑥ 그 밖에 협의기구에서 합의한 사항</p>	<p>②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정보 교환 ③ 세관기술의 지원 ④ 체약상대국의 관세 당국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에 따라 작성·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되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의 구축·운영 ⑤ 그 밖에 협정을 통일적으로 이행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p> <p>알아두기</p> <p>상호협력 절차(영제41조) (2)~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상호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2. 원산지와 관련되는 법령의 교환에 관한 사항 3. 서류 없는 통관절차의 구축, 전자무역환경의 증진 등 통관절차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4. 세관공무원과 통관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정보 교환 6. 그 밖에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기구에서 합의한 사항</p>
--	---	--

[하권] - 3과목 내국소비세법

■ 부가가치세법[시행 2022. 1. 1.] [법률 제17653호, 2020. 12. 22., 일부개정]

페이지	수정 전(수정할 내용)	수정 후
34p	<p><신 설></p> <p>⑧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p>	<p>⑧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p> <p>⑨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p>
43-44p	<p>③ 사업자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p> <p><중 략></p> <p>㉠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조기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p>	<p>③ 사업자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p> <p><중 략></p> <p>㉠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조기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p>
87p	② 부당하게 낮은 대가(법 제29조 제4항)	② 부당하게 낮은 대가(법 제29조 제4항)

	<p>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p>	<p>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 포함)의 공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p>
<p>90-91p 하단 ②</p>	<p>㉠ 예외 :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p>	<p>㉠ 예외 :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p>
<p>103p</p>	<p>④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법제34조의2, 영 제71조의2)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p>	<p>④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법제34조의2, 영 제71조의2)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p>
<p>117-118p 하단 2. (1)</p>	<p>① 적용대상 음식점업 나. 가.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108분의 8(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1년 12</p>	<p>① 적용대상 음식점업 나. 가.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108분의 8(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3년 12</p>

	월 31일까지 109분의 9)	월 31일까지 109분의 9)
127p	④ 공제금액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 ▷ 공제금액은 연간 500만 원을 한도로 하되,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	④ 공제금액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 ▷ 공제금액은 연간 500만 원을 한도로 하되,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
150p ③ ㉠ 예정고지·징수	<전략>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략>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div>
161p (9)	①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 <후략>	①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등록사업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 <후략>
	② 전자적 용역의 범위 국외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3자(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 특례에 관한 규	② 전자적 용역의 범위 국외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3자(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등록사업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

	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후략>	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나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 특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후략>
162p (9) 하단	<신 설>	⑦ 간편사업자등록의 말소 국세청장은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국내에서 폐업한 경우(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 간편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75p	④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제출불성실가산세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그 공급가액에 0.5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④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제출불성실가산세 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항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은 제외)의 0.5퍼센트 </div>
196p 3. (1)	① 예정부과기간 및 예정부과기한 <전략>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 예정부과기간 및 예정부과기한 <전략>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간이과세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203p (4) 하단	① 부가가치세 및 지방소비세의 세액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에 79퍼센트를 부가가치세로, 21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 한다.	① 부가가치세 및 지방소비세의 세액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에 1천분의 747을 부가가치세로,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 한다.
205p	3. 자료의 제출(법 제75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자료의 제출(법 제75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과태료(법 제76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4. 과태료(법 제76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별소비세법[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2호, 2021. 12. 21, 일부개정]

페이지	수정 전(수정할 내용)	수정 후
251p 1. (1)	①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하거나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①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입(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포함)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하거나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 주세법[시행 2022. 1. 1] [법률 제18593호, 2021. 12. 21, 일부개정]

페이지	수정 전(수정할 내용)	수정 후
289p 2.	<p>(2)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 발효주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맥주 :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0,300원(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 또는 (3)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되, 100원 미만은 버림) 	<p>(2)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 발효주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맥주 :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0,300원(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 또는 (3)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림)
300p ③	<p>(3) 주세율의 물가연동제</p> <p>2021년 3월 1일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p> <p>㉠ 반입 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 미납세 반출사유에 따른 주류로서 반입 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반출자로부터 그 주세를 징수한다.</p> <p>㉡ 자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 : 미납세 반출사유에 따른 주류가 반입 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자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 반입신고 : 미납세 반출사유에 따른 주류를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반입 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 미납세 반출사유에 따른 주류에 대하여 주세의 징수를 적</p>	<p>(3) 주세율의 물가연동제</p> <p>2021년 3월 1일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p> <p>㉠ 반출승인 :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미납세 반출사유에 해당하는 주류를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 반입 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 미납세 반출사유에 따른 주류로서 반입 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반출자로부터 그 주세를 징수한다.</p> <p>㉢ 자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 : 미납세 반출사유에 따른 주류가 반입 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자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용하는 경우 : 미납세 반출사유에 따른 주류에 대하여 주세의 징수를 적용할 때에는 그 주류의 반입 장소를 주류 제조장으로 보고, 반입자를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로 본다.</p>	<p>㉞ 반입신고 : 미납세 반출사유에 따른 주류를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반입 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㉟ 주세의 징수 적용 : 미납세 반출사유에 따른 주류에 대하여 징수를 적용할 때에는 그 주류의 반입 장소를 주류 제조장으로 보고, 반입자를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로 본다.</p>
<p>314p 11번 해설</p>	<p>다. 맥주 :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0,3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p>	<p>다. 맥주 :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0,3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p>